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510000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352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5100005 판결

전 문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4. 4. 18.

판결 선고2014. 5. 30.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78원 및 그 중 43,351,128원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3. 11. 2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1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B와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0. 11. 24.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11. 24. 신한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4.(이하 보증기한이 2012. 11. 23.로 변경되었다)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B은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2. 10. 1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4. 10. 신한은행에 위 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43,351,12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피고 A이 납부하여야 하는 추가보증료는 255,230원이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406,48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2,760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393,72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2.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1243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기준)194,000,000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43,351,128
종로광장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50,000,000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30,000,000	
피고 C에 대한 채무	70,390,000	
	293,741,128	
194,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44,000,078원(대위변제금 43,351,128원 + 추가보증료 255,230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393,7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351,12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3. 11. 2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권채권이 2013. 4. 10.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2. 10. 2.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위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2010. 11. 24. 체결되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2. 10. 15. 폐업하여 실제로 원고가 2013. 4. 10.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 C는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 중 채권보전비용 393,720원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보전채권 중 채권보전지용 393,7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B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채권보전비용은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5. 25. 선고 2000다4187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A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적정 가격에 매수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로광장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한 사실,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어음채권이 56,490,000원 상당되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과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 C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 A과 물품거래를 하여 오면서 피고 A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거나 피고 A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돈이 7,000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점(답변서 제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과 오랜 기간 물품거래를 하여 온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경제적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피고 A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 C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량

별지